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

발의연월일: 2024. 6. 3.

발 의 자:이수진·송옥주·박해철

민형배 • 강준현 • 문대림

신정훈 • 복기왕 • 전용기

김승원·박 정·허 영

노종면 · 김문수 · 문진석

한민수 · 송재봉 · 최민희

이워택 • 백승아 • 서영교

이병진・황정아・문금주

정일영・김 윤・김남근

허종식 · 조인철 · 염태영

김태년 · 권향엽 · 장종태

안호영 • 박홍근 • 박홍배

정진욱 • 이상식 • 김 현

이재강 • 부승찬 의원

(41일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는 주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,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은 병원에 상주할 수 있는 간병인 고용 등을 통해 간병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·훈련, 의료기관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·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자에 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하지 못하고, 신체적·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·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및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(안제47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).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7조의3(간병인 관리·감독 등)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(제4조의 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 및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"간병인"이라 한다)에 대한 관리·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 관리·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0조의4(간병인력의 양성)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1. 간병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·장기 간병인력 양성 계획
  - 2. 간병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원
  - 3. 간병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
  - 4. 그 밖에 간병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

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47조의3(간병인 관리·감독 등)
	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
	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
	기관의 장은 입원서비스 및 간
	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
	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
	하는 사람(제4조의2제1항에 따
	른 간병지원인력 및 환자의 보
	호자가 간병하는 경우는 제외
	한다. 이하 "간병인"이라 한다)
	에 대한 관리·감독 방안을 마
	련하여야 한다.
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
	관리·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
	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
	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
	<u>장할 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60조의4(간병인력의 양성) 보건
	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을 양성
	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
	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	1. 간병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
	및 중・장기 간병인력 양성

계획

- 2. 간병인력 양성기관의 설립및 지원
- 3. 간병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
- 4. 그 밖에 간병인력 양성에 필

   요하다고
   보건복지부장관이

   인정하는 사항